

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
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수리과학 선도인재 양성 교육연구팀 운영규정

제정 2020.11.15.

개정 2021.03.22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본 운영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(BK21)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충남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수리과학 선도인재 양성 교육연구팀(이하 “교육연구팀”이라 함)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본 운영규정은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, 행정전담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.

제 3 조 (연구윤리 확립)

- ① 교육연구팀의 장 및 참여교수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윤리교육 이수를 적극 장려한다. 참여대학원생은 학위과정 내 최소 1회 이상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연구팀의 장은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, 대학원생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교육연구팀의 사업 참여 배제,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 2장 교육연구팀의 구성 및 운영

제 4 조 (교육연구팀의 구성)

- ①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 자격은 충남대학교 수학과 소속의 교수 및 참여교수의 대학원생이다.
- ② 교육연구팀의 구성은 ①항에 의거한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, 교육연구팀에서 임용한 신진연구인력, 행정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. 참여교수 중에 한 명을 교육연구팀장으로 선정한다.

제 5 조 (교육연구팀의 장)

- ① 교육연구팀의 장(이하 교육연구팀장)은 참여교수 중 한 명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,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.
- ② 교육연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
 1.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
 2. 사업의 총괄 수행
 3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

4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
 5. 그 밖에 장관 및 한국연구재단 이사장(이하 전문기관의 장)이 정하는 사항
 6. 교육연구팀 산하 위원회 위원 위촉
- ③ 교육연구팀장의 직무를 대행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충남대학교 총장(이하 대학의 장)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팀 소속의 참여교수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 (참여교수의 자격 및 선정)

- ① 충남대학교 수학과로 발령받은 자
- ② 한국연구재단 “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관리 운영 지침” 제 9조의 자격을 충족한 자
- ③ 위 ①항과 ②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연구와 교육실적을 기반으로 평가한 후 선정한다.
- ④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소속기관에는 없지만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하여 대학의 장에게 승인을 받는다.

제 7 조 (참여교수의 변경)

- ① (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
 1. 건강상의 이유나 퇴직 등을 포함한 개인 신상 변화에 따라 교육연구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2. 참여교수의 연구가 교육연구팀의 연구 방향과 관련성이 없고 연구실적 및 사업참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
- ② (발의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참여교수 변경안을 발의할 수 있다.
 1. 교육연구팀장의 발의
 2.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2/3 이상 발의
 3.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참여교수 본인의 사업참여 종료 발의
- ③ (절차) 교육연구팀장은 발의된 참여교수 변경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·의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는다.
- ④ 신규 참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관리 운영 지침 제 9조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, 교육연구팀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격요건을 검증한다.
- ⑤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위의 절차를 거쳐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한다.
- ⑥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·퇴직·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변경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장한다.

제 8 조 (참여대학원생)

-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수학과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고용보험, 건강보험(지역가입제외),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(이하 4대보험이라 함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석사과정, 박사과정 그리고 석·박사 통합과정의 대학원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.
 1. 입학한 지 2년을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 대학원생
 2. 입학한 지 4년을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대학원생

3. 입학한 지 6년을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

- ② 참여대학원생이 휴학·취업·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교육연구팀은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.
- ③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팀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.
- ④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고 학과 콜로кви엄 및 교육연구팀의 세미나에 참여하여야 한다.
- ⑤ 장학금을 지원받는 교육연구팀 참여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교육·연구 활동을 보조하여야 한다.
- ⑥ 연구계획서를 매 학기말 제출하여야 하며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매년 1회 이상의 학회 발표와 논문 발표에 적극 노력한다.
- ⑦ 위의 ①항에서 ⑥항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한국연구재단의 “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관리 운영 지침”의 제 11조를 따른다.
- ⑧ (참여대학원생의 변경) 참여교수 변경, 입학, 휴학,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팀의 장의 변경 조치,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나머지 변경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“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관리 운영 지침”의 제 12조를 따른다.

제 9 조 (지원대학원생 선발)

-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.
- ② 지원대학원생의 선발과 변경은 1개 학기(6개월) 단위로 하되, 필요에 따라 학기 중이라도 지원대학원생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지원대학원생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학술위원회에서 의결 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.
 - 1. 지도교수의 의견
 - 2. 학술논문, 학술대회 발표 등 연구성과
 - 3.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
 - 4. 교육연구팀 기여도
- ④ 지원대학원생으로 지정된 참여대학원생에게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구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. 다만,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
 - 1. 취업 및 창업한 지원대학원생
 - 2. 휴학, 자퇴, 졸업 등 개인 신상에 따른 참여대학원생의 자격 상실
- ⑤ 지원대학원생의 해외연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.
- ⑥ 지원대학원생의 연구 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“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관리 운영 지침”의 제 13조를 따른다.
- ⑦ 연구 장학금 지원 기간 동안 다음의 각 호의 개인적인 사유로 지원대학원생의 임무를 미충족 시에는 사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1. 직계 가족 사망, 직계 가족 재해 및 본인의 중대 질병에 따른 사유

2. 교육연구팀의 연구 활동을 위한 국내외 기관 방문에 따른 사유
3. 외국인 지원대학원생의 방학 중 30일 미만의 본국 방문의사에 따른 사유

제 10 조 (신진연구인력)

- ①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달성 및 연구력 강화를 위하여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(이하 “신진연구인력”이라 함)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신진연구인력 자격 및 채용 관련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“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관리 운영 지침”의 제 14조와 충남대학교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한다.
- ③ 위의 ②항 규정에 맞는 신진연구인력을 학술위원회에서 의결 후 전체회의를 통해 특별 채용을 할 수 있으며, 학내 규정에 따른 일정기간의 채용공고를 낼 수 있다.
-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(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)로 하되,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학술위원회의 의결 후 전체회의의 결정에 따라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- ⑤ 교육연구팀은 신진연구인력에게 교육연구팀 운영비-인건비 예산 내에서 퇴직금 및 4대보험(고용보험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등)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한다.

제 11 조 (행정전담인력)

- ① 교육연구팀의 행정전담인력은 교육연구팀의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와 교육연구팀장의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.
- ② 행정전담인력의 자격요건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자이다(수학과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우대).
- ③ 자격요건을 충족되는 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채용하며,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는 최소 1주일 이상 공개채용 공고를 낸다.
- ④ 지원 필수서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이며, 경력증명서와 연구실적물을 첨부할 수 있다.
- ⑤ 행정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- ⑥ 행정전담인력의 인건비는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250만원 이내로 교육연구팀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.

제 12 조 (학술위원회)

- ① (목적) 교육연구팀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학술 진흥 및 교류·협력을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(구성) 교육연구팀장은 위원장 1인과 위원을 위촉하며,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③ (직무)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 1. 교육연구팀 학술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
 2. 참여대학원생 평가와 선발
 3. 신진연구인력과 연수인력 선발

4. 해외석학 초빙
5. 학술대회 개최 및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안

제 13 조 (운영위원회)

- ① (목적) 교육연구팀은 참여인력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(구성) 교육연구팀장은 위원장 1인과 위원을 위촉하며,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③ (직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 1. 교육연구팀 운영규정 개정
 2. 교육연구팀의 세부사업 및 기본 운영 계획
 3. 교육연구팀의 예산집행 계획 및 결산
 4. 성과급 지급 여부와 관련 세부사항
 5. 사업성과 홍보 등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안

제 14 조 (자체평가위원회)

- ① (목적)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재정집행 감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한다.
- ② (구성)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이 위촉한 자체평가위원장과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.
- ③ (직무) 자체평가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교육연구팀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와 재정집행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교육연구팀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은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교육연구팀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 재정집행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연구팀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교육연구팀 전체회의)

- ① 교육연구팀은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최종결정한다.
- ② 교육연구팀장과 참여교수 1/3 이상의 요청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③ 전체회의는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한다.
 1. 교육연구팀 운영규정 개정
 2. 교육연구팀의 장단기 운영 계획
 3. 교육연구팀의 예산 및 결산
 4. 참여인력 선발 및 결정
 5.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- ⑤ 전체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있으나 참여교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의 회담과 그에 대한 동의 절차로 전체회의 개최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 16 조 (단기 해외연수)

- ① 단기 해외연수는 15일 이내의 연수로 국제학술대회 참여 또는 교육연구팀의 연구와 교육과 관련된 해외기관 및 기업의 방문 연수를 말한다.
- ② 단기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참여대학원생은 해외연수와 관련한 지원서와 증빙서류 및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연구팀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을 말한다.
 - 1.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로 지정된 교육연구팀의 참여대학원생
 - 2. 지도학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저자로 참여하는 교수
- ④ 연수 지원액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산 운용 시행세칙을 따르며, 참여교수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.
- ⑤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연수는 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,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한다.
- ⑥ 연수 후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교육연구팀이 필요로 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제 17 조 (장기 해외연수)

- ① 장기 해외연수는 15일을 초과하는 연수로 교육연구팀의 연구와 교육과 관련된 해외기관 및 기업의 방문 및 해외 인턴쉽 등을 말한다.
- ② 장기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참여대학원생은 해외연수와 관련한 지원서와 증빙서류 및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학술위원회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.
 - 1. 지도교수의 추천
 - 2. 교육연구팀의 국제화 목표 달성과의 적합성
- ④ 연수 지원액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산 운용 시행세칙을 따른다.
- ⑤ 장기 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자는 연수 후 2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- ⑥ 연수 후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교육연구팀이 필요로 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제 18 조 (해외석학 초빙)

- ① 해외석학 초빙은 교육연구팀의 연구 분야의 전문가나 저명한 해외학자가 온라인 초청강연/세미나 또는 국내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연구팀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 수행, 세미나/집중강연,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, 연구소,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.
- ③ 해외학자의 국내 초빙은 교육연구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과 해당 학자의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 활용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교육연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활용완료 후

세부 활용내역과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 해외학자가 국내에 직접 초빙되는 경우 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, 항공료, 강사료 및 체재비를 지원한다.
- ⑤ 해외학자를 원격 온라인 강연 및 세미나를 통해 활용한 경우에는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강의료,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⑥ 해외학자를 6개월 이상 국내에 직접 초빙한 참여교수는 해외석학 초빙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해당 해외학자와 공동연구논문 1편 이상을 SCIE 저널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제 19 조 (사업비 편성)

교육연구팀은 한국연구재단의 “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관리 운영 지침”에 따른 사업비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. 예산변경시 비목간의 변경이 가능하나, 항목별 편성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이 불가능하다.

제 20 조 (성과급)

- ① 매 회기년도 자체평가 결과 및 사업 참여도 평가 등 [별첨1]의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여인력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참여인력의 성과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규모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③ 성과급은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(행정전담인력), 참여대학원생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.

1. 참여교수의 성과급

- (1) 참여교수를 대상으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.
- (2) 매 회기년도 1인 기준 4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신진연구인력, 행정전담인력의 성과급

- (1) 실적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한다.

3.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

- (1) 교육연구팀의 대학원생의 성과급은 국내외 학회 발표자 및 공동발표자 중 대학원생 실적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.
- (2) 대학원생 우수논문포상의 선정기준 및 포상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- ④ 기타 성과급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 21 조 (교육연구팀 운영비)

- ① 사업비 총액의 10% 이내 또는 5,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출한다. 다만,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“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”을 따른다.
- ② 교육연구팀 운영비는 인건비, 국내여비, 학술활동지원비, 산업재산권 출원·등록비, 일반수용비, 회의비,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.

제 4 장 기타

제 22 조 (보칙)

-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및 충남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과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르며, 그 외 세부 사항은 교육연구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- ② 본 규정의 적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 해석한다.

제 5 장 부칙

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

본 규정이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[별첨1]

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교육연구팀 성과급 운영 및 지급 지침

1. 참여교수 성과급

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가 연구실적과 교육연구팀 운영 등에 기여한 경우 매 년차 말에 다음 표와 같은 기준으로 교육연구팀 운영비 및 간접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1인당 지급액은 연간 4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영역	평가항목		배점	평가점수	
	항목				
연구	SCIE 논문 편수	2편 이상	6		
		1편	3		
	대표 논문의 질적 우수성	세부 전공분야별 IF 상위 20% 이내	6		
		세부 전공분야별 IF 상위 20% 이상	3		
	국제 연구 교류 실적	2건 이상	6		
		1건	3		
교육	대학원생 배출	박사 1명 혹은 석사 2명	5		
		석사 1명	3		
	대학원생 취업률	취업률 50% 이상	5		
		취업률 50% 미만	3		
	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도	상	5		
		중	3		
하		1			
교육연구팀 기여도	학생 선발, 보고서 작성 등 교육연구팀 운영 전반 에 대한 기여	상	15		
		중	10		
		하	5		
기타	K-MOOC, 과학 대중화 기여, 언론 활동 등	2건 이상	2		
		1건	1		
총점=					

2. 신진연구인력 성과급

본 교육연구팀에 근무하는 신진연구인력이 교육, 연구실적, 교육연구팀운영 등에 기여한 경우 근무기간 1년 단위로 다음 표와 같은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한다.

영역	평가항목		배점	평가점수
	항목			
연구	SCIE 논문 편수	2편 이상	6	
		1편	3	
	대표 논문의 질적 우수성	세부 전공분야별 IF 상위 20%이내	6	
		세부 전공분야별 IF 상위 20% 이상	3	
	국제 연구 교류 실적	2건 이상	6	
		1건	3	
교육연구팀 기여도	교육연구팀 학술활동 참여	상	5	
		중	3	
		하	1	
	교육연구팀 교육활동 참여	상	5	
		중	3	
		하	1	
기타	과학 대중화 기여	2건 이상	2	
		1건	1	
총점=				

3. 참여대학원생 성과급

본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한다.

영역	평가항목		배점	평가점수
	항목			
연구	논문 편수	2편 이상	6	
		1편	3	
	대표 논문의 질적 우수성	SCIE	6	
		SCOPUS	3	
		학진등재지	1	
	학술회의 발표	2건 이상	4	
		1건	2	
	연구계획서 및 학업결과보고서 성취도 평가			0~4
교육연구팀 기여도	교육연구팀 학술활동 참여	상	5	
		중	3	
		하	1	
	교육연구팀 교육활동 참여	상	5	
		중	3	
		하	1	
총점=				

- (1) 재학생인 경우 학점이 3.5 미만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.
- (2) 논문 : SCIE등재 학술지, 학진등재(후보) 학술지, 국제 SCIE미등재 학술지
- (3) 학술회의 발표 : 국내, 국제학술회의 발표

4. 행정전담인력 성과급

본 교육연구팀에 근무하는 행정전담인력에 대한 성과급은 근무기간 1년 단위로 다음 표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. 행정전담인력에 대한 성과급은 교육연구팀 운영비,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영역	평가항목		배점	평가점수
	항목			
업무 능력	업무 달성을 위한 노력	상	5	
		중	3	
		하	1	
	업무 달성도	상	5	
		중	3	
		하	1	
업무 태도	근면성 및 성실성	상	5	
		중	3	
		하	1	
	업무에 대한 책임감	상	5	
		중	3	
		하	1	
총점=				

부 록

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교육연구팀의 연구지원 장학생 선발 및 의무 규정

1. 대상

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연구 장학금 지급 대상 대학원생은 참여 연구 분야의 전일제 석·박사 과정 대학원생 중에서 선발한다.

2. 선발규정

- ①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연구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연구계획서와 실적평가서를 매 학기 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출된 연구계획서와 실적평가서 등을 기초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술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- ③ 재학생인 경우 학점이 3.5 미만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다.

3. 장학금 지급

-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은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운영 관리 지침 13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되, 장학금은 국내외 우수 대학원생 유치와 교육·연구의 최적화를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한다.
- ② 장학금의 종류는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연구장학금, 국내외 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등이 있다.
- ③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은 국제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를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의 경우 교육연구팀에서 인정한 단기연수를 제외하고 해외 거주 기간이 2주(14일) 초과 시에는 본 사업의 교육 및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개월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

4. 의무규정

- ① 제 2장 제 8조 (참여대학원생) ③ ~ ⑥항
- ② 위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.